

1. 개정이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하며,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허가 요건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추가(안 제2조)

항만구역 내에 기 운영 중이나 그간 항만법령에는 미반영 되어있던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항만시설에 추가함.

나. 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등)

지방관리항만의 토지·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도를 포함토록 함

다.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허가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공용부두가 없는 항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원료수급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 중인 액체화물의 경우 이송시설과 함께 이를 취급하기 위한 하역시설(계류시설 포함)도 예외적 임대가능토록 요건을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규제 검토 예정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 등을”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에”를 “국가 또는 시·도에”로, “국가 귀속·기부채납”을 “국가 또는 시·도 귀속·기부채납”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일”을 “액체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이거나 같은”으로 한다.

제25조제8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를 “3년”으로, “말한다)”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대허가 :”를 “임대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신청 :”을 “신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6호서식 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국가 귀속·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를 “국가 또는 시·도 귀속·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양수내용의 양수 사유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 시설 임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제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

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를 “「항만법」 제2조제9호에”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나목 중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를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항만법」 제60조제1항에”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

제125조제9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로 한다.

④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가목(2) 중 “항만법 제2조제2항제6호의”를 “항만법 제2조 제5호가목3)의”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고, “항만공사의”를 “항만개발사업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항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용 목적 토지 ·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임대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임차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임대 목적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 []액체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계류시설 포함) []동일 경로에 액체화물이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목적물	[] 건축물 [] 계류시설 [] 토지 [] 하역시설 [] 기타		
	임대 금액			

그 밖의 특이사항

「항만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관리청 전용목적 토지 · 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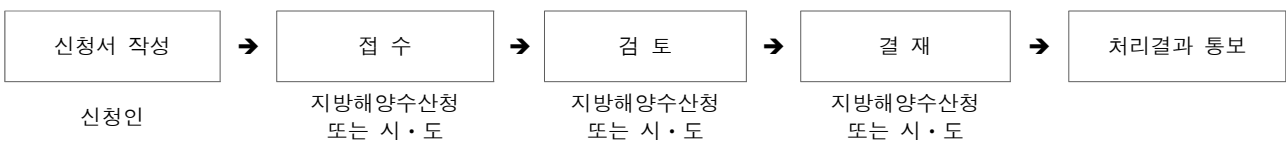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 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항만지원시설)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 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 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 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 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 서 등) ①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 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 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	6. ----- ----- ----- ----- ----- 관한 사항은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여 지정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
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①
(생략)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감정평가법

인등을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
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_____

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2. (생략)

제16조(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귀속·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 단서에 따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2호-----

2. (현행과 같음)

제16조(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
----- 국가
또는 시·도에 -----

----- 국가
또는 시·도 귀속·기부채납 -

-----.

1. 2.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라 비관리청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나. (생략)

다. 동일 경로에 액체화물이 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

1.·2. (현행과 같음)

3.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액체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이거나 같은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관
한 사항은 -----

따른다.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	-----
준으로 <u>3년마다</u> (매 3년이 되는	----- <u>3년</u> -----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
를 <u>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	-- <u>말한다</u>)마다 -----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1. -----
토지·항만시설의 <u>임대허가</u> :	----- <u>임대허가</u> : -
2022년 1월 1일	-----
2. 제43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2. -----
이전 인가 <u>신청</u> : 2020년 1월	----- <u>신청</u> : -----
1일	--